# 산학협력단정관

개정 2007. 3. 1.
개정 2011. 3.21.
개정 2011.11. 1.
개정 2013.10. 1.
개정 2015. 7. 1.
개정 2017. 9. 1.
개정 2018. 3.12.
개정 2018.10. 8.
개정 2019. 9.25.
개정 2021. 1.13.
개정 2021. 3.24.
개정 2024. 8.21.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하며, 을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육이념과 국가산업 및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소재지)** ① 산학협력단의 주사무소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553 성남캠퍼스 내에 둔다. (개정 2011.11.1)

② 산학협력단의 분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771 대전캠퍼스(구 주소: 중구 용두동 143-5 을지대학교 대전캠퍼스 내)와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12(금오동, 을지대학교 의정부캠퍼스)내에 둔다. (개정 2011.11.1., 2018.3.12. 2021.1.13., 2024.8.21.)

**제4조(업무)** 산학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5. 본교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6. 본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7. 산학협력 관련 교육 및 훈련
8. 법 제36조에 의해 설립된 학교기업 운영에 대한 지원

9. 법 제37조에 의해 대학의 교지에 설치되는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10. 사회복지 및 보육사업 수탁업무 등 지역사회 연계사업 (개정 2018.10.8)
11. 그 밖의 산학협력에 필요한 사업

##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5조(수입)**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산학협력단의 수입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산학협력계약에 의한 수입금
3. 산학협력 성과에 의한 수익금
4.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에서의 운영수익금 (개정 2011.3.21)
6. 이자수입
7. 연구·교육 시설 및 장비 사용에 따른 사용료
8. 학교법인의 전입금
9. 기타 산학협력사업에 의한 수입금

**제6조(지출)**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 소속 연구원 및 직원의 인건비
2. 산학협력단의 관리·운영비
3.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4. 대학의 시설·운영 지원비
5.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의 운영비 (개정 2011.3.21)
6.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7. 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8.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9. 기타 산학협력에 필요한 경비

**제7조(회계관리)** ① 산학협력단 소관의 모든 수입 및 지출은 산학협력단의 회계로 한다.
② 회계는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제8조(회계기관)**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 및 지출원을 두며, 사업의 규모에 따라 수입원 및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지출방법)** ①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②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계좌이체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추진비·여비 등 수표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소액의 지출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제10조(회계연도)**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

다.

**제11조(예산서 제출)** ① 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산학협력단의 예산을 편성하여 본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을 확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회계연도 중에 수익의 증감에 따라 확정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10일 이내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결산서 제출)** ① 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법령이 정하는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단장은 확정된 산학협력단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장 조직 및 운영

**제13조(이사)** 산학협력단에 이사 1명을 두며, 단장이 이사가 된다.

**제14조(단장)** ① 단장은 총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단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총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그 소관업무를 통할한다.

**제15조(단장의 직무대행)** 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의 의해 지명된 직무대행자의 임기는 전임 단장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6조(감사)** ① 산학협력단에는 감사 1명을 둔다.

② 감사는 총장이 임면한다.

③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산학협력단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여야 한다. 감사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단장 또는 산학협력단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⑥ 감사실시는 을지대학교 감사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7.1)

**제17조(하부조직)** ① 산학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부조직으로 대전캠퍼스와 성남캠퍼스, 의정부캠퍼스에 따로 부단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11.1., 2021.1.13.)

② 성남캠퍼스에는 산학기획센터, 연구지원센터를 두고, 대전캠퍼스와 의정부캠퍼스에는 각각의 연구행정팀을 둔다. (개정 2011.11.1, 2013.10.1., 2017.9.1., 2019.9.25., 2021.1.13., 2021.3.24.)

③ 각 하부조직의 업무분장은 단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단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제19조(직원, 연구원 등의 채용)** 산학협력단은 필요한 경우 자체의 예산범위 내에서 직원, 연구원, 조교를 임용할 수 있으며 임용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20조(비밀유지의무)** 산학협력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4장 운영위원회

**제21조(구성)** ①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② 위원은 대학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제2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학협력의 기획·조정
2. 산학협력단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시행을 위한 세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산학협력단의 운영상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24조(의사정족주)**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5장 보 칙

**제26조(보상금의 지급)** ① 제5조제2호 내지 제5호와 제9호의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 기준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다.

**제27조(정관이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규정 변경 절차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해산)** 산학협력단이 정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해산한다.

**제29조(잔여재산의 귀속)** 산학협력단을 해산하였을 때의 남은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

**제30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제31조(공고의 방법)**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본교 학보 또

는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부 칙**

① 이 정관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07년 3월 1일 현재 을지의과대학교 및 서울보건대학 산학협력단과 체결된 산학협력계 약상의 권리·의무는 본교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정관은 2011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8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8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1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1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정관은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